

늘봄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협약기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늘봄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 가. 늘봄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대상교 선정 및 매칭
-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급
- 다. 기관 간 교육협력활동 홍보

2.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 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나. 늘봄학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지원
- 다. 사업 대상교와의 소통 체계 구축
- 라. 사업비 관리·집행 및 정산
- 마. 사업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 바. 사업 종료 후 운영 결과 보고 및 성과평가
- 사. 기관 간 교육협력활동 홍보

제4조(이행) ①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하는 운영 지침 및 사업기관 준수사항, 프로그램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약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효력 및 기한) ①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양 기관의 상호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 근 식

정 근 식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 신 호

장 신 호